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561

발의연월일: 2024. 8. 5.

발 의 자:한병도·허 영·이해식

이정문 · 강득구 · 복기왕

조 국・임오경・정태호

박 정・박수현・유건영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민의 참여와 민주적인 지방자치행정 추진을 목표로 함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법적으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함.

더욱이 현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행정적·재정적지원 부족 등 미비점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제도 안착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를 「지방자치법」에 규정하여 주민자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주민참여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함으로써 보다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부터제27조의4까지 신설).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에 제27조의2부터 제27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7조의2(주민자치회 설치)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고양을 위하여 읍·면·동별로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
- 제27조의3(주민자치회의 기능) ① 제27조의2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설 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 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주민자치회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②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주민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
 - 2. 지방자치단체가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서 위임하거나 위탁한 사항 제27조의4(주민자치회의 구성 등)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④ 그 밖에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주민자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규정에 따라 설치 ·운영 중인 주민자치회는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된 주민자치회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 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를 삭제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27조의2(주민자치회 설치) 풀뿌
	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
	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
	•동별로 해당 행정구역의 주
	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u>둘 수 있다.</u>
<u><신 설></u>	제27조의3(주민자치회의 기능) ①
	제27조의2에 따라 주민자치회
	가 설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주민자치회에 위임하거
	나 위탁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
	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가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u>사항</u>
	3.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또
	는 규칙에서 위임하거나 위탁
	<u>한 사항</u>

<신 설>

- 제27조의4(주민자치회의 구성 등)
 -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조례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 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 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④ 그 밖에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 례로 정한다.